

「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」

첨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이은미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9. 19.
- 회부일자 : 2025. 10. 13.
- 상정일자 : 2025. 10. 13.

2. 제안이유

- 평창군 1인가구는 전체가구의 과반에 근접할 만큼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, 돌봄 공백, 경제적 불안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.
- 이에,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,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기본계획의 수립 · 시행(안 제6조)

- 시행계획의 수립 · 시행(안 제7조)
-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(안 제8조 ~ 제9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주민의 복지 증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,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,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조성과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1조(목적) 및 안 제2조(정의)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

어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.

- 안 제3조(군수의 책무)에서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에 적극 노력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명시함.
- 안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및 안 제7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에서 지원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함.
- 안 제5조(지원대상자) 및 안 제6조(사업 등), 안제7조(지원제한 등)에서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8조(실태조사) 및 안 제9조(지원사업)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을 위한 1인가구 실태조사와 주거안정 지원 사업,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- 우리군의 1인가구 현황을 살펴보면, 2018년 6,154가구에서 2023

년 7,935가구로 약28.9% 증가하여 전체 가구수의 41.4%를 차지하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음.

※ 참고자료

연도	전체가구	1인가구	비율(%)	비고
2018	17,612	6,154	34.9	
2019	17,758	6,300	35.5	
2020	18,305	6,793	37.1	
2021	18,519	7,181	38.8	
2022	18,704	7,386	39.5	
2023	19,175	7,935	41.4	

출처 : 2024 평창통계연보(가구원수별 가구)

-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,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,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,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불임 관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(생 략)
2. 주민의 복지증진
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- 나. ~ 차. (생 략)
3. ~ 7. (생 략)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건강가정기본법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